

「제61회 대한민국체육상」 후보자 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시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목적

-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진흥에 기여(1963년 제정)
-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2. 포상 규모

- [수량] 9개 부문(대통령표창 7개 부문 / 장관표창 2개 부문)

부문	훈격*	부상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장애인경기상, 장애인체육상, 심판상	대통령표창 7점 장관표창 1점**	상금 1천만원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장관표창 1점	시상품

-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규모 협의와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훈격 및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부문별 훈격이 조정될 수 있음(대통령 표창 7점, 장관 표창 1점)

3. 추천 대상자

- 수공기간('23. 9. 14. 기준)
 -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추천대상자
 -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4. 추천 방법

- 추천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의 장, 그 밖에 체육(학술)단체의 장
- 제출기간: 2023. 6.12.(월) ~ 7. 4.(화)
- 제출방법: 전자문서(공문)
- 제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 044-203-3126)
- 제출서류: ①추천대상자 명단, ②후보자 추천서, ③후보자 공적확인서, ④감사부서장 확인서, ⑤공적조서, ⑥정부포상 동의서, ⑦추천제한사항 조회목록, ⑧기타 공적 증빙자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외국인의 경우 국영문 공적조서, 이력서(상세 인적사항, 현지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사항 등) 첨부 * 세부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제출서류 작성요령 】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1. (붙임1) 추천대상자 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23년 9월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2. (붙임2) 후보자 추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요지 및 공적내용은 2022.12.31.기준으로 작성 ■ 공적요지는 반드시 75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3. (붙임3) 후보자 공적 및 징계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으로 작성하되, 과도한 띄어쓰기 금지 * 공적심사 자료 등으로 활용
5. (붙임4) 공적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사항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하고, 점수산정에 해당하는 주요경력만 기재 (최근순)
6. (붙임5)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이상의 포상 수상사실만 기재
7. (붙임6) 추천제한사항 조회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8. 기타 공적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내용은 2022.12.31 기준으로 작성하고, 공적기간은 경력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확히 산정 후 기재 ■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분야의 공적을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개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추상적 표현 삼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5. 포상 추진 절차 및 일정

○ 후보자 추천공고 및 접수 : 6. 12.(월)~7. 4.(화)*

* 추천기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제출마감일이 7.4.(화)이므로 후보자 개인은 각 기관의 공고문(접수 날짜 등) 확인 및 기관별 포상담당자 문의를 통해 접수 마감일 등 확인

○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규모 협의 : 7월 초

○ 공개검증 및 범죄·결격사유 조회 : 7월 중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훈대상자 추천 : 8월 중

○ 정부포상 대상자 결정 통보 : 9월 중

○ 제61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 : 10. 13.(금) 예정

6. 추천 제한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② 형사처분

- ①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③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⑧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③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①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②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③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①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⑦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⑧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포상 추천 후 추천 제한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 추천을 철회함

○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국·영문 공적조서 및 이력서를 추가로 첨부

○ 상훈 관계법령과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7. 기타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23년 10월)

○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참고**대한민국체육상 개요**

-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 * 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선정 대상
 - ① 우수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②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③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④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종류 : 9개 부문(정식 : 8개 부문* / 특별상 :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종류/훈격	내용
경기상	각종 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경기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또는 팀
지도상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수선수의 발굴·지도·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 등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
연구상	체육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진흥 등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공로상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단체, 기업체
진흥상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 또는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장애인경기상	각종 국내·외 장애인경기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장애인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장애인체육상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지원·연구·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거나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심판상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활동 및 여건조성 등으로 공정스포츠 구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체육인의 어버이로서 모범적 자녀 교육에 헌신하신 분

※ '22년부터 '극복상', '특수체육상'이 '장애인경기상', '장애인체육상'으로 명칭 변경